

- 코로나19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- 인천광역시 노인요양시설 등의 방역지침 행정조치 안내문

1. 인천광역시에서는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의2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노인요양시설 등의 방역기준 행정조치를 발령함

가. 명령대상 : 인천광역시 노인요양원 · 주야간보호센터 책임자 · 종사자 및 이용자

나. 적용기간 : 2020. 12. 31.(목) 0시 ~ 상황 종료시 까지

다. 처분의 효력발생일 : 2020. 12. 31.(목) 0시

라. 명령사유 : 인천 지역사회에 코로나19 감염병 급증 관련, 인천시 노인요양시설 등의 방역기준을 강화하여 감염병 지역 확산 방지

마. 명령내용 :

1. 종사자는 고지한 코로나19 주기적 선제검사 시행

* 신규 종사자의 경우는 근무 전 진단검사 실시 후 주기적 선제검사 시행

2. 종사자, 입소자(이용자)는 상시 실내 마스크 착용

* 단, 호흡기 질환 및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입소자(이용자)는 제외

3. 종사자, 입소자(이용자)의 의심증상 확인, 노인요양원 면회금지 등 방역수칙 이행점검 시행

4. 신규 입소자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정 후 입소 시행

5. 종사자, 입소자(이용자) 등 시설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, 기침 등 아래 의심증상 여부 매일 확인 및 기록

< 코로나19 주요 증상 >

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

6. 위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배제(출근금지), 입소자(이용자)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즉시 실시

*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(2020.12.23. 보건복지부 행정명령으로 기시행중)

2. 명령 위반 시

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제2항 및 제4항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능

나. 위 조치를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모든 확진 관련 검사, 조사, 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음

3. 이 명령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명령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제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음

2020. 12. 31.

인 천 광 역 시

